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입소·이용료 납부)

1. ‘갑’의 매월 이용료는 익월 6일 납부하기로 한다.(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②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③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지불능력이 없

- 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별표11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 ()원의/일로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본원도 이에 따른다. (별첨 7-1 : 보건복지부 고시-시설급여 비용)
3. 시설급여 비용은 월 31일일 경우와 30일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일급여수가 ()원 $\times$ 31일 $\times$ 20% = ()원, 일급여수가 ()원 $\times$ 30일 $\times$ 20% = ()원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비율이 변경 될 수 있다.
4.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을 포함하여 1일(3식) 9,000원으로 하며, 일 할 계산한다.
5. 본인부담금 총합계는 급여비용 +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본인(또는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시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의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 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93,070
바-2	장기요양 2등급	86,340
바-3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81,540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88,520
바-5	장기요양 2등급	82,120
바-6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7,54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